

# 교육품질관리 규정

□ 제정 : 2019. 6. 1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육품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, 그리고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대상)**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.

1. 학과 및 행정부서 성과지표 평가
2. 대학발전계획 추진과제 성과평가
3. 주요 정량지표 평가
4. 대학 자체평가
5. 교육 만족도 조사
6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평가

**제3조(담당)** 대학 차원의 교육품질 관리는 기획처에서 총괄한다.

**제4조(학과 및 행정부서 성과지표 평가)** ① 학과 및 행정부서는 교육품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관리한다.

1. 공통지표 및 자율지표로 구성된 학과의 성과지표
  2. 공통지표, 부서지표, 자율지표로 구성된 부서의 성과지표
- ② 학과 및 행정부서에 대한 성과지표의 선정과 변경은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- ③ 학과 및 행정부서 성과지표 평가는 각각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학과 및 행정부서의 계획수립과 추진에 대한 지원업무는 기획처 기획과에서 담당하고, 평가와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는 기획처 평가과에서 담당한다.
- ⑤ 기획과는 차기연도에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달성해야 할 성과지표를 공지하고, 성과지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학과 및 행정부서에 통지한다.
- ⑥ 학과 및 행정부서는 매년 성과지표의 달성 목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과에 제출한다.
- ⑦ 기획과는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근거로 매년 대학운영계획서를 작성해,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⑧ 학과 및 행정부서는 매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여부를 포함한 운영성과를 자체평가하여 평가과에

4-2-42 교육품질관리 규정

운영결과서로 제출한다.

⑨ 평가과는 학과 및 행정부서에서 제출한 운영결과서를 근거로 매년 대학운영결과서를 작성해,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⑩ 평가과는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대학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, 대학발전과 교육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**제5조(대학발전계획 추진과제 성과평가)**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대학발전계획 추진과제 성과평가의 제반사항은 별도의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운영 규정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6조(대학 자체평가)**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대학 자체평가의 제반사항은 별도의 대학자체평가규정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7조(주요 정량지표 평가)** ① 평가과는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량지표를 조사해 관리한다.

② 주요 정량지표의 선정과 변경은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③ 주요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평가과는 주요 정량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8조(교육만족도 조사)** 교육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만족도 조사의 제반사항은 별도의 교육만족도 조사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**제9조(교육품질관리현황의 보고)** 평가과는 본교 교육품질에 대한 관리현황을 종합해 매 학기별로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분석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10조(결과의 활용)** 기획처는 교육품질관리 활동에 대해 평가, 분석, 심의된 결과들이 대학구성원에게 공유되게 하며, 다음과 같은 대학의 주요 정책결정에 환류되도록 한다.

1. 대학발전계획의 수립과 개정
2. 대학자체평가계획의 수립과 개정
3.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운영 정책 개선
4. 연도별 행정부서 및 학과의 운영계획 수립과 개선
5. 기타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반 방향 설정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